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117

제출연월일: 2024. 7. 22. 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,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중 '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'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, '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'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"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"를 "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3호 중 "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"를 "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의3. 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6의5. 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3.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4.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

제55조제3호 중 "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"를 "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
제5조(제조업자의 결격사유)
1
<u>끝나거나(집행</u>
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
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
<u>라</u>
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
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 소지
자의 결격사유 등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집행이 면제된 날부

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~ 6의2. (생 략)

6의3. 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 6의3. 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 의2의 죄(이하 "음주운전 등" 이라 한다)로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

<신<u>설></u>

<신 설>

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
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 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5. 「도로교통법」 제148조 의2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7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- 제19조(취급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 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사기・전 자충격기・석궁을 취급(제조・ 판매・수수・적재・운반・저장 ・소지・사용・폐기 등을 말한 다. 이하 같다)하여서는 아니 되 며,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 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 만,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 ・도검・분사기・전자충격기・ 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 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

제29조(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제29조(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

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	<u>!</u>
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]
있는 사람	_
7. (현행과 같음)	
(2·③ (현행과 같음)	
제19조(취급 금지)	_
	-
	_
	-
	_
	_
	_
	_
	_
·	
	_
	_
	-
	-
	-
·.	
1. • 2. (현행과 같음)	
3.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	-
까지,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	
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	

사람

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 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 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.

- 1. ~ 3. (생략)
-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② (생략)

- 제55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| 제55조(임원의 결격사유) -----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2. (생략)
 -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~ 6. (생략)

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	결격
사유) ①	
1 . 9 (처체코 가야)	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4.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,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 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② (현행과 같음)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. -----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